

보고, 조사, 집행:

1. Stryker 직원은 관련 법규나 Stryker 정책 또는 절차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소속 부문별 사장, 준법 책임자 또는 본사 CEO, 법률 고문, 최고 준법 책임자 또는 최고 재무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부문별 사장과 준법 책임자, 법률 고문, 최고 준법 책임자 및 최고 재무 책임자는 자신들이 보고받은 사항을 CEO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모든 중대한 위반 행위는 Stryker 이사회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2. 위반 사항 보고자의 신원은 (당사자가 원하면) 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기밀로 보호될 것입니다. 익명 보고도 가능합니다. 보고된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직원은 회사에서 수행하는 모든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3. Stryker는 준법의 실천을 위해, 최대 해고를 포함하는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징계 조치의 근거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Stryker 사업 윤리 강령, 본 준법 프로그램, 그외 회사 또는 사업부 정책의 위반을 비롯한 관련 법규, 정책이나 절차 위반, (b) 위반 사항을 보고하지 않는 행위, (c)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을 선의로 회사에 보고한 직원에 대한 모든 유형의 보복 행위, (d) 임원이나 관리자(supervisor)가 위반 행위를 예방하거나 탐지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한 경우.
4. Stryker 준법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부문별 사장이나 준법 책임자 또는 Stryker의 CEO, 법률 고문, 최고 준법 책임자 또는 최고 재무 책임자에게 연락하십시오.

stryker®

Joint Replacements

Trauma, Extremities & Deformities

Craniomaxillofacial

Spine

Biologics

Surgical Products

Neuro & ENT

Interventional Spine

Navigation

Endoscopy

Communications

Imaging

Patient Care & Handling Equipment

EMS Equipment

stryker®

Stryker 준법 프로그램

회사 정책 제8호

**Copies of all Corporate Policies
may be found on
www.stryker.com/corporatepolicies**

2825 Airview Boulevard
Kalamazoo, MI 49002
t: 269 385 2600 f: 269 385 1062



서론:

1941년 Dr. Homer H. Stryker에 의해 창립된 이래 지금까지, Stryker Corporation은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최고 수준의 윤리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념해 왔습니다. Stryker의 이사회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업무 활동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본 준법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Stryker Corporation 및 국내외 자회사, 부문(divisions)과 운영 조직(operating units) (이하 "부문(Divisions)"으로 총칭함)에 소속된 모든 임직원 및 관리자에게 적용되며 윤리 강령(Code of Conduct)에 명시된 준법 절차를 보완합니다..

책임과 절차:

1. **임직원 및 관리자. Stryker Corporation의 모든** 임직원과 관리자에게는 Stryker의 사업 윤리 강령, 관련법, 정책과 절차 그리고 본 준법 프로그램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자, 본사 및 부문별(divisional) 임원과 Stryker 경영진에서 지정한 그외 임직원들은 그들이 이러한 법률, 정책과 절차를 이해하고 이를 준수할 것이라는 서면 확인서를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2. **Stryker Divisions.** Stryker는 운영 부문(operating divisions)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며, 각각의 Stryker Divisions는 그들의 업무를 윤리적이며 적법하게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2.1. **부문별 사장단(Divisional Presidents).** 각각의 Stryker Division을 책임지고 있는 사장이나 관리자(이하 "부문별 사장(Divisional President)"으로 총칭)에게는 자신의 사업부에 소속된 직원들이 관련 법규, 정책, 절차 및 윤리 기준을 인지하여 준수하도록 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부문별 사장은 부문별 준법 책임자(Compliance Officer)를 임명하고 부문별 준법 위원회(Compliance Committee)를 구성하여 사장이 준법과 관련된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지원하며, 부문별 준법 위원회에서 활동할 것입니다.
 - 2.2. **부문별 준법 책임자(Divisional Compliance Officers).** 부문별 준법 책임자는 부문(Division)의 임원이나 고위직 인사여야 합니다. 부문별 준법

책임자는 부문별 준법 위원회 의장 역할을 담당하고 위원회 활동을 지휘할 것입니다. 부문별 준법 책임자는 부문별 사장과 Stryker의 최고 준법 책임자와 법률 고문에게 보고합니다.

- 2.3. **부문별 준법 위원회(Divisional Compliance Committee).**
 - (a) **구성** 각 부문별 준법 위원회는 부문별 사장, 준법 책임자, 그리고 부문별 사장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그외 직원들로 구성됩니다.
 - (b) **책임.** 다음은 각 부문별 준법 위원회의 책임 사항입니다:
 - (1) **관련 법규와 기준에 대한 인지.** 부문별 준법 위원회는 Stryker 윤리 강령(Code of Conduct), Stryker 정책 매뉴얼, 부문별 직원 핸드북, Stryker와 부문(Division)에서 정한 기타 정책 및 절차, 그리고 Division의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법규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2) **교육 및 훈련** 부문별 준법 위원회는 관련 법규, 정책 및 절차에 관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관장합니다.
 - (3) **모니터링/감사** 부문별 준법 위원회는 관련 법규, 정책 및 절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감사 절차 확립을 책임집니다.
 - (4) **보고.** 부문별 준법 위원회는, 부문별 사장과 부문별 준법 책임자를 통해, 모든 준법 관련 문제들을 Stryker의 CEO, 최고 준법 책임자, 법률 고문 또는 최고 재무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부문별 사장은 또한 Division의 준법 현황(compliance status)을 Stryker 이사회와 함께 매년 검토합니다.

3. **Stryker 최고 준법 책임자, 법률 고문, 본사 재무 담당 임원**
 - 3.1 **최고 준법 책임자** Stryker의 최고 준법 책임자는 Stryker 준법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감독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러한 소관 업무에는 Stryker의 부문별 준법 책임자, 부문별 준법 위원회, 그리고 본사 준법 위원회와 협력하여, 이들의 준법과 손해 배상 책임 방지 노력을 뒷받침하고, 잠재적 손해 배상 책임 문제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회사의 준법 활동과 현황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모니터링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 3.2. **법률 고문** Stryker의 법률 고문과 법무 담당 직원들은 Divisions와 회사가 그들의 준법 계획을 개발, 실행 및 운용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여기에는 Divisions의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 자문과 상담 제공, Division에서 교육 및 준법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 3.3. **본사 재무 담당 임원** Stryker의 최고 재무 책임자, 컨트롤러, 재무 담당, 내부 감사 담당 부사장, 조세 담당 부사장, 그리고 본사 재무 담당 직원은 Divisions과 회사가 재정, 세금, 보고 및 회계 관련 법규와 요건을 준수하도록 돕고, Divisions이 이러한 법규 및 요건 위반 사항 보고 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4. **Stryker 본사 준법 위원회.** Stryker 본사 준법 위원회는 본사의 재무,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준법(compliance), 법무, 인사, 내부 감사, 인허가/품질 관리(RA/QA), 정보 기술 및 기타 회사 전반에 걸친 직능을 대표하는 관리자진으로 구성됩니다. 본 위원회의 소관 업무에는 준법 및 배상 책임 방지 활동을 각 직능에 걸쳐 조율하고, 회사 전반에 걸쳐 준법 전략을 실행하며, 부문별 준법 및 위험 배제(risk avoidance) 노력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5. **Stryker 이사회(Board of Directors).** Stryker 이사회는 Stryker 준법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합니다..